

인증기관 휴업·폐업 신고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7일
신고인	기관명	지정번호	
	대표자	사업자등록번호 (생년월일)	
	주 소	전화번호	
휴업·폐업 연월일		휴업기간: ~	

사유

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8조(제35조제2항) 및 「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42조제1항(제58조)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기관의 []휴업 []폐업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

첨부서류	인증기관 지정서	수수료 없 음	
처 리 절 차			
신고서 작성 신고인	→ 접수	→ 신고 수리 여부 검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	→ 휴업·폐업 사실 통보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게시